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한택**

목 차

- I. 서 론
- II.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
- III. 결 론

* 이 연구는 2013년도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기초연구활동비 수혜를 받아 연구하였음.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1957년 ‘Sputnik 1호’가 발사된 지 반세기가 넘는 현시점에서 각국의 우주에 대한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위성발사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등이다. 여기에 2012년 12월 북한의 은하 3호 로켓발사와 2013년 1월 한국의 나로호(KSLV-1) 발사로 인해 한반도가 새로운 우주경쟁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는 그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¹⁾ 또한 미국과 러시아가 주로 주도해왔던 우주개발에 최근 중국이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여 새로운 우주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우주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동북아의 우주경쟁의 속도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는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우주법선언)²⁾을 하면서 1959년

-
- 1) 2013년 1월 30일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한국의 나로호 발사 성공에 대해 미국정부는 북한의 로켓과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로켓 발사가 금지 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책임감 있게(responsibly)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연합뉴스 2013년 1월 31일자). 한편 2012년 1월 23일 UN안보리는 결의 2087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동 결의에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도 포함되었다.
 - 2) UNGA Resolution 1962(XVIII), 13 December 1963; 동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원칙으로 선언하였다.
 1. 활동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여져야 한다.
 2. 모든 국가는 평등을 기초로 국제법에 따라 우주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3. 우주공간과 천체는 주권의 주장, 점유 또는 기타의 수단에 의한 국가에 의해서 취득되지 않는다.
 4. 활동은 UN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5. 국가는 정부기관에 의해서든 비정부단체에 의해서든 불문하고 우주공간에 있어 활동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가진다. 비정부단체에 의한 경우 책임당사국은 허가를 발급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기구에 의해서 활동을 할 경우 그 책임은 당해기관 및 기관의 참가국에 의해 부담 지우는 것으로 한다.
 6. 국가는 협력과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른다. 국가는 타국의 상응할 이익에 타당한 고려를 배려하고 국가가 타국의 활동에 유해한 간섭으로 하는 활동 또는 실험의 하나가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계획을 개시하기 전에 적당한 협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설립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로 하여금 이러한 법원칙을 정식법규로 만드는 조약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총회의 요구에 따라 COPUOS는 우주활동에 관한 성문법 제정작업에 착수하고, 몇 년간의 준비작업과 교섭을 추진하여 마침내 COPUOS는 1966년 12월 우주활동의 원칙조약안을 마련하였다. 이 조약의 정식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인데, 일명 ‘우주조약’으로 불리며, 우주법의 일반원칙들을 담고 있다.

캐나다 맥길(McGill)대학교의 Ram Jakhu교수는 이 조약이 이미 100개국 이상이 비준한 조약이라는 면에서 ‘우주의 헌법’이며 우주활동의 법적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원칙조약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우주기술의 발달로 인한 우주의 상업화 (commercialization), 우주의 무기화(weaponisation), 규제완화(deregulation), 글로벌화(globalization)로 인해 우주조약에 대한 해석과 그 이행방법 및 추후 법 발전에 관한 논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 중 적어도 3/4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들³⁾임을 고려해 볼 때 우주조약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이 우주조약의 올바른 해석과 함께 이 조약이 가진 국제법상 의미에 대하여 진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COPUOS를 통하여 UN총회에서 채택된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다자조약들의 당사국과 서명국은 2013년 5월 현재 아래와 같다. 현재 한국은 달조약을 제외하고 4개의 조약의 당사국이고 북한은 우주조약과 등록협약의 당사국이다.⁴⁾

7. 국가는 우주물체와 그 승무원에 대해서 관할권과 관리의 권한을 가진다. 등록국의 영역 외에서 발견될 이러한 물체들 또는 그 구성부분은 반환되는 것으로 한다.
8. 발사국 또는 발사시설을 조달하는 국가는 외국 혹은 그 국민 또는 법인의 손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가진다.
9. 우주비행사는 우주공간에 있어 인류의 사절로 간주되는 것으로 한다. 국가는 외국영역 또는 공해에서 사고, 조난 또는 긴급한 착륙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원조를 주는 것으로 한다. 우주비행사는 등록국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되는 것으로 한다.

3) Ram Jakhu,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ournal of Space Law*(이하 *JSL*), 2006, pp. 31, 33, 35.

4)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은 1967년 1월 27일에 채택되고, 1967년

〈표 1〉 우주관련조약의 당사국과 서명국 수

협정명	당사국	서명국
우주조약	102	27
구조협정	92	24
책임협약	89	22
등록협약	60	4
달조약	13	4

또한 우주법분야에서 COPUOS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약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나 UN결의를 통하여 법원칙으로 발전한 분야로 DBS 원칙, RS원칙, NPS원칙, 개도국협력원칙 같은 것들이 있다.⁵⁾ 이러한 UN결의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법적

- 10월 10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UNGA Resolution 2222(XXI), 19 December 1966; 1967년 10월 13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일명 외기권 우주조약 또는 우주조약).
-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외기권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은 1967년 12월 19일 채택되고, 1968년 12월 3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UNGA Resolution 2345(XX I), 19 December 1967; 1969년 4월 4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일명 구조협정).
-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은 1972년 3월 29일 체결되었고, 1972년 9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UNGA Resolution 2777(XXVI), 29 November 1971; 1980년 1월 14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일명 책임협약).
- 외기권 우주에 발사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은 1975년 1월 14일 체결되었으며, 1976년 9월 15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UNGA Resolution 3235(XXIX), 12 November 1974; 1981년 10월 15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일명 등록협약).
- 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약(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은 1979년 12월 18일 체결되었으며 1984년 7월 11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UNGA Resolution 34/68, 5 December 1979. 일명 달조약).
- 5) -국제 직접 TV방영을 위한 국가들의 인공위성 이용을 규율하는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DBS 원칙')으로 이 결의는 1983년 2월 4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우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Space; RS원칙)으로 이 결의는 1986년 4월 1일 작업그룹에서 컨센서스(consensus)에 의하여 결의로 채택되었다.
- 우주에서의 핵원료 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NPS원칙)으로 이 결의는 1992년 12월 14일 총회결의 47/68를 통하여 표결 없이(without vote) 채택되었다.
-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면서 모든 국가의 이익과 이해를 위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협력원칙)으로 이 선언은 1996년 6월

구속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전혀 법적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닌 그러나 때가 되면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질 ‘연성국제법’(soft international law)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성국제법(hard international law)보다는 법적 효력 면에서 부족하지만 영향력을 가진 법임에는 틀림이 없다.⁶⁾ 1974년 11월 12일 UN총회도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⁷⁾ 이렇게 1979년 달조약 이후 COPUOS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보다는 비구속적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기에는 우주개발이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여 이 두 나라의 견해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나 유럽우주기구(ESA)의 등장,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우주개발참여로 합의도출이 쉽지 않게 되었으며, 특히 1958년 18개국으로 시작된 COPUOS의 구성국이 점차 늘어 2013년 12월 현재 74개국이나 되어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곳이 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 논문에서는 우주헌법이라고 불리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서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을 하고 있는 조항들,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국제적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

우주조약은 전문과 본문 1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실질규정이고, 제14조 이하는 최종규정으로 되어 있다. 전문은 조약작성의 동기, 조약의 정신 및 조약의 목표를 밝히고 있으며, 그 자체가 구속력을 지니고 있고, 본문 각조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COPUOS의 제39차 회기에서 채택되고 제51차 UN 총회 결의의 부속서 형태로 되어 있다.

6) Seidl-Hohenveldern, *International Economic “Soft Law”*, 163 *Hague Recueil* (1979), pp. 165, 194-213; 김한택, 『국제항공우주법』 제2판, 와이북스, 2012, p. 220.

7) Preamble, UNGA Res. 3232(XXIX), November 12, 1974.

8) Jakhu, *op. cit.*, pp. 89-90.

1.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에 의하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색과 이용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영역’(province of all mankind)이어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에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며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하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에 있어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63년 우주법선언 원칙 1에서 밝힌 “우주 활동은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모든 인류의 이익’(interests of all mankind)라는 표현은 1959년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전문⁹⁾에서 처음 발견되며,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조항으로 명시된 것은 국제협약 상 우주조약이 최초이다.¹⁰⁾ 따라서 어떠한 국가도 우주활동이 UN헌장 제2조 7항¹¹⁾에 명시된 국내관할권(domestic jurisdiction)사항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¹²⁾

우주조약 제1조에서 ‘우주의 자유이용’은 국제법상 ‘오용’(misuse)이나 ‘남용’(abuse)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타국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이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과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원칙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international customary law)¹³⁾과 ‘강행규범’(jus cogens)¹⁴⁾으로 발전된 조항이라

9)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firm foundation for the continuation and development of such cooperation on the basis of freedom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Antarctica as applied during the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accords with the interests of science and the progress of all mankind; N M Matte, Limited Aerospace Natural Resources and Their Regulation, 7 *Annals of Air and Space Law*(이하 AASL), 1982, p. 390.

10) James J. Trimble, “The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and its Effect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11 *Pepperdine Law Review*. 1984, pp. 530-531.

1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12) C. Wilfred Jenks, *Space Law*, Fredrick A. Praeger, 1965, p. 209 *recited from* Jakhu, *op. cit.*, p. 49.

13) 국제법에서 국제관습법의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성문법인 조약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조약을

고 할 수 있다.¹⁵⁾ He Qizhi도 우주조약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논문 “The Outer Space Treaty in Perspective”에서 이 조항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었다고 한 바 있다.¹⁶⁾ 그리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평등의 원칙에 의한다는 원칙(on a basis of equality)은 UN헌장 제2조 1항에서 UN 및 그 회원국이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sovereign equality)의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한다는 조항과 일치하고 있다.

우주활동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주개발국 (spacefaring states)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¹⁷⁾ 따라서 1996년 6월 COPUOS의 제39차 회기에서 채택되고 제51차 UN총회 결의의 부속서 형태로 채택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면서 모든 국가의 이익과 이해를 위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협력선언)¹⁸⁾은 제목대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서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 협력을 수행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은 우주조약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기권 우주의 탐사와 이용은 개도국을 고려한 모든 국가의 이익과 이해를 위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¹⁹⁾

폐기시킬 수 도 있는 힘을 가진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법이다. 우주관습법의 형성에 관하여 V S. Vereshchetin & G M. Danilenko, Custom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JSL*, 1985, pp. 22-35 참조.

14)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일반국제법의 규범을 ‘강행법규’(*ius cogens*)라고 하는데 일탈이 가능한 ‘임의규범’(*ius dispositivum*)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제53조에 강행규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가 되어 있다.

“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 충돌될 때에는 무효이다. 이 협약 상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라 함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 어떠한 위반도 인정이 아니며, 아울러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일반국제법의 후속 법규범에 의해서만 개정가능하다고 간주되어지고 승인된 법규범의 총체이다.”

15) Jakhu, *op. cit.*, pp. 43, 48, 49.

16) He Qizhi, “The Outer Space Treaty in Perspective”, 25 *JSL*, 1997, p. 97.

17) N. Jasentuliyana, “Article I of the Outer Space Treaty Revisited”, 17 *JSL* 1989, p. 139.

18) UN Doc. A/AC.105/C.2/L.211. of June 11. 1996.

19) Nandasiri Jasentuliyana,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p. 46-47.

(2) 전유화금지

우주조약 제2조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는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專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1963년 우주법선언 원칙 3에서 “우주공간과 천체는 주권의 주장, 점유 또는 기타의 수단에 의한 국가에 의해서 취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우주의 ‘비전유원칙’(principle of non-appropriation)은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 high seas)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Bin Cheng 교수는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그리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²⁰⁾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의 지위와 같아서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 없고, 다만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은 우주법의 인접분야인 항공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1959년 남극조약의 영향을 받았다.²¹⁾ 전유화금지의 원칙은 국제조약법의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유화금지는 어떠한 공적인 또는 사적인 실체에 의해서도 금지됨을 의미한다. 일부 학자들은 전유화금지가 국가전유화(national appropri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체가 전유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정부이건 공공기관이건 사적기관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유화 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²²⁾ 이와 같은 국제공역의 선언은 15세기 이후 유럽국가들에 의해서 무주지(*terra nullius*)에 대하여 선점으로 원리를 적용시켰던 식민지이론을 배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²³⁾

He Qizhi는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와 비전유원칙은 빠른 시일 내에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된 ‘인스턴트 국제관습법’(instant customary international law)이라

20) Bin Cheng, “The 1967 Space Treaty”, 95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1968, p. 564.

21) P. P. C. Haanappel, *The Law and Policy of Air Space and Outer Space-A Comparative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p. 11-12.

22) Jakhu, *op. cit.*, pp. 44, 48.

23) Heidi Keefe, Making the Final Frontier Feasible: A Critical Look at the Current Body of Outer Space Law, 7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995, p. 358.

고 언급한 바 있다.²⁴⁾ 사실 이 개념은 Bin Cheng 교수가 1965년 발표한 논문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Outer Space: ‘Insta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²⁵⁾에서 법적확신(*opinio juris*)과 관행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주법 발전의 광범위한 틀은 1963년 우주법선언이라고 하면서 관습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요소는 법적확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관습법형성에서 국가관행과 시간적 요소의 중요성이 부인되는 셈이다.²⁶⁾

한편 1979년 달조약은 제11조 1항에서 달과 그것의 천연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²⁷⁾이라고 명시하면서 제11조 2항에서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와 동일하게 달은 주권의 주장, 사용이나 점령, 기타 어떠한 수단에도 의해서도 국가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전유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달조약은 국제제도(international regime)와 관련하여 제11조 7항에 (a) 달 천연자원의 질서 있고 안전한 개발, (b) 달 자원의 합리적 경영, (c) 달 자원의 사용기회의 확장, (d) 달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제제도는 당사국이 달의 자원개발이 가능한 시기에 수립할 의무를 지며(달조약 제11조 5항), 이와 같은 국제제도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당사국은 달에서 발견되는 모든 천연자원에 관하여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UN사무총장, 대중(public) 및 국제과학공동체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달조약 제11조 6항). 2013년 5월 현재 달조약의 가입국수는 13개국

24) He Qizhi, *op. cit.*, p. 97.

25) Bin Cheng,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Outer Space: ‘Insta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23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65, p. 23.

26)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 Routledge, 1997, p. 46.

27) Bin Cheng 교수는 *res extra commercium*(또는 *territorium extra commercium*)과 인류공동유산영역이 어떤 국가에 의해서도 영토로서 전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지니나 전자가 소극적인 개념이고 후자가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res extra commercium*에 있어서는 평화시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선박, 항공기, 우주선에 대하여 배타적 준영토관할권(quasi-territorial jurisdiction)을 존중하는 한 일반국제법은 그러한 국가에게 동 지역을 사용할 것과 심지어는 원하면 다소의 남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동 지역 내에서 국가들은 천연자원의 취득, 무기실험과 군사훈련을 위해서 광범위한 지역을 봉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국내산업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장으로서도 이곳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인류공동유산개념은 아직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류공동유산영역 내에서의 천연자원의 경영, 개발, 분배는 개별국가나 국민의 창의나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 · Oxford, 1997, p. 436; 김한택, 전게서, pp. 262-263).

에 불과하고 우주조약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으므로 현재의 우주법에서는 인류공동유산 개념이 우주조약에서 명시하는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개념보다 우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²⁸⁾

(3) 국제법의 적용

1963년 우주법선언 원칙 4에서 “우주 활동은 UN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우주조약 제3조는 당사국들이 우주의 탐사이용활동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협력과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UN헌장 등 국제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규칙을 우주에 적용한다는 것은 제1조에 명시된 ‘모든 인류의 이익’을 더욱 더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제1조 2항에서 국제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규정한 후 제3조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우주활동에 국제법을 적용한다고 한 것은 우주의 자유이용체제가 국제법상의 자유이용체제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UN헌장, 특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국내관할의 불간섭 규칙 또는 국제기구의 틀에 있어서 협력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우주조약 자체가 조약법 및 일반국제법(general international law)에 의해 부여되고 있는 효력의 모든 조건에 규율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약의 서명능력, 비준절차,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 계약 불이행의 항변(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의 원칙 및 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에 관한 규칙들이 우주조약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²⁹⁾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1항은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약의 준수에 관한 기본원리인 “pacta sunt servanda”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는 “유효한 모든 조약은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신의 성실하게(good faith)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정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신의 성실’의 개념은 국제법의 기본

28) 달조약에 관하여 김한택,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1권 1호, 2006, pp. 216-236 참조.

29) E. R. C. van Bogaert, *Aspects of Space Law*,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6, pp. 41-42.

적인 원리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1957년 “노르웨이 공채 사건”(Norwegian Loans Case)에서 로터팍트(Lauterpacht) 판사는 “신의 성실에 일치하여 법을 지킨 것은 논의할 여지없이 법의 일반원칙이며 또한 국제법의 일부이다.” 라는 개별의견(separate opinion)을 제시한 바 있다.³⁰⁾

우주조약의 제정자들도 이 조약이 분명하게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법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위해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작성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조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한 이유로 국내법의 규정을 들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가 1932년 “단찌히에 있는 폴란드국민의 대우사건”(Treatment of Polish Nationals and Other Person of Polish Origin or Speech in the Danzig Territories)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한 국가는 국제법이나 효력 있는 조약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대하여 국내 헌법을 원용할 수는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³¹⁾ 따라서 우주조약의 당사국은 국내법을 이유로 우주조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한편 우주조약에서 우주활동이 국제법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한다함은 우주조약과 일반국제법의 원칙이 충돌할 때에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 derogat generali)에 따라 우주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³²⁾

(4) 타국의 권리존중과 협력 및 투명성·개방성의 의무

우주조약 제9조에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본 조약의 당사국은 협조와 상호 원조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의 상응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에 있어서의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노르웨이간 “어업사건”(Anglo-Norwegian Fisheries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어느 지역에 대한 특정한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우주조약 제1조 1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³³⁾ 타국의 권리존중의 원칙은 국제

30) ICJ Rep. (1957), 9, 53.

31) 1932 PCIJ Rep., ser. A/B, no. 44. at 24.

32) Jakhu, *op. cit.*, pp. 34, 40, 44.

33)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ICJ (1951), 133.

조약법의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활동시 국가들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제1조(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 조사의 자유)와 제3조(국제법의 적용)에서 찾아볼 수 있고, 제10조에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본 조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국제적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약의 당사국은 이들 국가가 발사한 우주 물체의 비행을 관찰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의 요청을 평등의 원칙하에 고려하여야 하며, 관찰을 위한 이러한 기회의 성질과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조건은 관계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에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에서 활동을 하는 본 조약의 당사국은 동 활동의 성질,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 뿐만 아니라 UN 사무총장에 대하여 통보하는데 동의하여야 하며, 동 정보를 접수한 UN 사무총장은 이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제12조에서 달과 기타 천체상의 모든 배치소, 시설, 장비 및 우주선은 호혜주의 원칙하에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대표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그러한 대표들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방문할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방해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최대한의 예방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방문 예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전통고가 부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현행 국제우주제도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³⁵⁾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34) Jakhu, *op. cit.*, pp. 49, 54.

35) ‘모든 국가의 관심사’(concern of all states)라는 대세적 의무규범의 존재는 ICJ의 1970년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Barcelona Traction Case)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되었다.
“한 국가의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와 외교적 보호분야에서 타국에 대해 발생하는 의무는 본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 본질상 전자는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이다. 관련된 권리들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모든 국가가 그들의 보호에 법적이익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이다.”; Barcelona Traction Case, ICJ Rep. (1979) 4, 32.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 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³⁶⁾

2.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1)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1963년 우주법선언 원칙 7에서 “국가는 우주물체와 그 승무원에 대해서 관할권과 관리의 권한을 가지며, 등록국의 영역 외에서 발견될 이러한 물체들 또는 그 구성부분은 반환되는 것으로 한다.”는 것과 원칙 9에서 “우주비행사(astronaut)는 우주공간에 있어 ‘인류의 사절’(envoys of mankind)로 간주되고, 국가는 외국영역 또는 공해에서 사고, 조난 또는 긴급한 착륙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원조를 주고, 우주비행사는 등록국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우주조약 제5조는 우주비행사들은 인류가 우주에 보낸 일종의 사절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국들은 이들에게 조난이 닥친 경우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우주비행사와 우주선은 등록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국들이 우주에서 우주비행사에게 위협한 현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국이나 UN사무총장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8년 4월 22일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외기권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구조협정)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우주조약은 비상착륙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협정은 비상착륙국의 영토와 공해상 기타 당사국의 관할권 밖에 착륙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며, 우주비행사들은 구조된 후 안전하고 신속히 발사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조협정 제4조). 우주조약 제5조는 ‘우주비행사’(astronaut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조협정에서는 이것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서 ‘우주선 요

36) Jakhu, *op. cit.*, pp. 48-49.

원'(personnels of spacecraf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비행사라는 용어는 우주선을 조종하는 모든 인간, 또는 우주선상에서 조종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인간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우주선에 승선하는 경우, 우주탐사 및 기타 우주활동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우주에서의 임무를 위해 과학자가 동승하는 경우 이들을 우주비행사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우주선에 승선하고 임무의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는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데에는 요원(personnel)이라는 표현방법이 적절하다.³⁷⁾ 미국의 크리스톨(Carl Q. Christol) 교수도 1968년 구조협정은 우주요원(space personnel)에 관하여 우주조약 제5조에서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우주활동에 참여한 모든 승무원은 구조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³⁸⁾

그러나 최근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우주관광(space tourism)이 이목을 끌고 있는데 최초의 우주관광객(space tourist)은 미국인 사업가인 데니스 티토(Dennis Tito)로 그는 2000만 달러를 러시아에 지급하고 2001년 4월 29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되는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Soyuz)-TM32’ 우주선에 탑승하여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에 6일간 머무른 후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 바 있다.³⁹⁾ 앞으로 이와 같은 우주관광이 활발해질 때 이들 우주관광객들도 과연 ‘인류의 사절’로 파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조협정은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함께 우주물체의 반환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원래 우주조약 제8조는 우주물체는 등록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며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등록국가의 관할권이 유지된다면서 다른 곳에 비상착륙하거나 그 일부분이 떨어지면 관계국은 발사국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협정은 이 원칙규정을 특히 제5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⁴⁰⁾

37) van Bogaert, *op. cit.*, pp. 100-101.

38) Carl Q. Christol,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Pergamon Press, 1982, p. 183.

39) 중앙일보, 2001년 4월 30일자.

40)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계약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내의 지구상,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 귀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계약국은 발사국 및 UN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 1항). 또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발견된 영역 상에 관할권을 보유하는 각 계약국은, 발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또한 발사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국가로부터의 원조를 받아, 동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 2항). 그리고 발사당국의 영역 한계 외에서 발견된 대기권에

(2)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1963년 우주법선언 원칙 5에서 “국가는 정부기관에 의해서든 비정부단체에 의해서든 불문하고 우주공간 활동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가지고, 비정부단체에 의한 경우 책임당사국은 허가를 발급하고 계속적인 감독을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국제기구에 의해서 활동을 할 경우 그 책임은 당해기관 및 기관의 참가국에 의해 부담 지우는 것으로 한다.”는 것과 원칙 8에서 “발사국 또는 발사시설을 조달하는 국가는 외국 혹은 그 국민 또는 법인의 손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국가에게 두 가지 형태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우선 우주조약 제6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모든 우주활동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지게 하는데, 이러한 우주활동을 외기권 공간에서 수행하던 천체(celestial bodies)에서 수행하던 또한 정부기관에 의하여 수행하던 비정부기관(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서 수행하던 상관없이 관계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고, 비정부기관이 우주활동을 수행하려면 관계국가의 허가를 받아 그 감독 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비정부기관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지만 국가가 배타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기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관할권 하에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비국가적 실체들(non-state entities)의 우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조항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⁴¹⁾

또한 이러한 우주활동을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구와 회원국들이 다 같이 국제책임을 진다. 여기서 국제기구란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주조약 제13조도 정부 간 국제기구(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만일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닌 기구에 의한 우주활동의 경우는 관련국가의 허가와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도 관련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기존의 일반국

발사된 물체 또는 동 구성부분품은, 발사국의 요청에 따라, 발사국의 대표에게 반환되거나 또는 동 대표의 처분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발사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반환되기 전에 그 물체가 동일 물체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제5조 3항), 계약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계약국이 기타 다른 장소에서 회수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계약국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발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발사당국은, 전기 계약국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 유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제5조 4항). 그리고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 및 반환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는 발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제5조 5항).

41) Diederiks-Verschoor & Ko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3rd revise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p. 28.

제법이 국가 관련활동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에 관련될 때에만 국제책임을 지던 원칙에서 우주활동을 하는 사기업체에 대하여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새로운 규범이 탄생된 것이다. 또한 개인이 우주활동 중 입힌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새로운 국제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또한 우주조약 제7조에 의하면 우주물체의 발사국이나 발사의뢰국 또는 발사영토국이나 발사설비관할국은 그 우주물체로 인하여 다른 당사국이나 그 국민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진다. 이러한 우주조약 상 국제책임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72년 3월 29일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책임협약)이 체결되었다. 책임협약에 따르면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가 지구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사국이 절대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책임협약 제2조). 그러나 이러한 손해가 피해국의 중대한 과실에서 발생하였거나 피해국이나 그 국민의 고의적인 작위,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발사국이 증명한 때에는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손해가 발사국의 국제법위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의 면제도 생기지 않는다(책임협약 제6조).⁴³⁾ 책임협약에서는 책임부담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우주물체로 인해 야기되는 손해의 발생지점에 따라 우주물체에 의하여, 지구표면이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을 지우고(책임협약 제2조 및 제4조 (a)항), 한편 지구표면 이외의 곳에서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을 부담 지우고 있다(책임협약 제3조 및 제4조 (b)항). 책임협약에서는 과실책임을 적용되는 경우를 지상 이외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동 협약 제3조에서는 우주물체가 야기한 손해에 대한 과실책임에 대하여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후자는 손해가 후자의 과실 또는 후자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42) Jakhu, *op. cit.*, pp. 52-53.

43) 또한 손해가 발사국의 국민에게 발생한 경우나 그 우주활동에 참가한 외국인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발사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뿐 이 조약은 적용되지 않는다(책임협약 제7조). 손해가 지상이 아닌 곳에서 다른 우주물체나 그 안의 사람이나 재산에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준 우주물체의 발사국이나 그 관할하의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책임협약 제8조). 이러한 사고로 다시 제3국이나 그 국민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이 사고에 관련된 두 국가는 이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third State)을 진다.

규정하고 있다.⁴⁴⁾

이 협약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일반 국제법상의 국제책임제도와는 달리 사전에 ‘국내구제절차의 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제책임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전에 가해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해 놓은 구제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책임 있는 발사국의 국내법원 등에서 배상청구를 하여도 된다. 다만 발사국의 국내구제절차나 다른 조약상의 국제구제절차를 추구하는 동안에는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동시에 이 협약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수 없다(구조협약 제11조). 발사국이 책임을 지는 배상액은 국제법과 정의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존재하였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책임협약 제12조).⁴⁵⁾

1978년 “Cosmos 954사건”에서 소련의 위성 Cosmos 954는 캐나다 영공에 진입하여 분해되고 그 잔해가 캐나다 북서부지역 Great Slave 호수를 둘러싼 여러 곳과 그곳에서 Baker 호수를 향해 북동쪽에 떨어졌는데, 그 면적은 오스트리아의 크기에 상당하였다. 이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곳이 아니므로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 위성의 잔해에 대한 청소작업과 복구작업에 관하여 미국의 카터(Carter) 대통령이 캐나다 수상 튀르도(Turdeau)에게 즉각적인 기술적 도움을 주겠다고 함으로써 1978년 10월까지 진행되었는데, 500마일에 이르는 영역에서 약 60여개의 방사능오염지역이 포착되었고, 이 작업을 통하여 2개의 파편이 방사능물질임이 확인되었다. 캐나다는 이러한 사실을 소련과 UN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소련도 이러

44) 손해배상의 청구는 ‘외교경로’(diplomatic channels)를 통하여 발사국에 제기한다. 청구국가와 발사국 사이에 외교관계가 없으면 제3국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청구국이나 발사국이 모두 UN 회원국인 경우에는 UN사무총장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책임협약 제9조).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발생일로부터 또는 책임 있는 발사국의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국가가 손해의 발생을 모르거나 책임 있는 발사국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면 알 수 있었으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손해를 처음부터 모두 알 필요는 없으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손해가 더 확인되면 손해액을 수정하여 청구하면 된다(책임협약 제10조).

45) 손해배상문제가 발사국에 통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외교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당사국들은 당사자 일방의 요구로 배상청구위원회(Claims Commission)를 설립한다. 배상청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는데 양당사자 대표와 이들이 합의하여 선임한 제3국 대표로 구성한다. 양 당사자는 위원회설립을 요구한 지 2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임명하여야 하며 제3국 대표가 위원장이 된다. 1인 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배상청구위원회는 배상청구의 타당성을 결정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배상액을 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들이 구속력 있는 것으로 미리 합의하였으면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결정은 기간의 연장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다(책임협약 제14-20조).

한 방사능오염이 Cosmos 954에서 유래하였음을 인정하고, 전문가를 캐나다에 파견하여 방사능추적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캐나다의 요구대로 위성과 핵원자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⁴⁶⁾ 마침내 1981년 4월 2일 캐나다 대사와 소련 외무차관사이에 공식적인 의정서가 체결되었는데, 동 의정서는 Cosmos 954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소련이 캐나다에게 3백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완전히 배상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양국이 책임협약의 당사국임도 불구하고 이에 의존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smos 954사건이 책임협약과 관련하여 선례를 형성한 것은 캐나다에 추락한 ‘우주폐기물’이 결론적으로 ‘우주물체’로 간주되어 캐나다가 책임협약에 근거하여 배상을 추구했다는 점이다.⁴⁷⁾

(3)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1963년 우주법선언 원칙 7의 “국가는 우주물체와 그 승무원에 대해서 관할권과 관리의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제8조에 외기권 우주에 발사된 물체 및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등록국가가 관할권과 통제권을 갖고, 또한 우주에 발사된 우주물체의 소유권은 그것이 우주에 있건, 천체에 있건, 지구로 돌아오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록국가는 선박의 국적국가와 그 지위가 비슷하다. 이로써 선박에는 그 선박의 국적국가가, 항공기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가 그리고 우주선에는 우주선의 등록국가가 관할권을 가지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수송수단이 가지는 관할권을 ‘준영토관할권’(quasi-territorial jurisdiction)이라고 한다.⁴⁸⁾ He Qizhi도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과 등록된 우주물체에 대한 통제는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었다고 한 바 있다.⁴⁹⁾ 이러한 우주물체의 등록과

46) Cosmos 954 사건에 관하여 Paul G. Dembling, *Cosmos 954 and the Space Treaties*, 6 *JSL*, 1978; Peter P. Haanappel, *Some Observations on the Crash of Cosmos 954*, 6 *JSL*, 1978; Eilene Galloway, *Nuclear Powered Satellites; The U.S.S.R. Cosmos 954 and the Canadian Claim*, 12 *Akron Law Review* 1979; Bryan Schwartz and Mark L. Berlin, *After the Fall; An Analysis of Canadian Legal Claims for Damage Caused by Cosmos 954*, 27 *McGill Law Journal*, 1982; Alexander F. Cohen, *Cosmos 954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Satellite Accidents*, 10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4 참조; 김한택, 전게서, pp. 271-273.

47) Lotta Viikari, *The Environmental Element in Space Law-Assessing the Present and Charting the Futur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p. 72.

48)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p. cit.*, p. 73.

49) He Qizhi, *op. cit.*, p. 97.

관할권 문제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1974년 11월 12일에 제정된 “외기권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등록협약)이 체결되었다.

등록협약 제1조에서 ‘발사국’이라 함은 첫째, 우주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구매한 국가, 둘째, 그 영토 또는 시설로부터 우주물체가 발사된 국가를 의미한다고 하고, ‘우주물체’라 함은 우주 물체의 복합 부품과 동 발사 운반체 및 그 부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등록국’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우주 물체의 등록이 행하여진 발사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협약 제2조에 의하면 우주물체를 지구궤도나 그 이상에 발사한 국가는 적절한 등록부를 마련하여 발사한 우주물체의 등록을 하고 UN사무총장에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 발사국이란 우주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의뢰한 국가, 발사설비나 영토를 제공한 국가를 모두 의미한다. 또한 우주물체는 우주물체의 구성부분, 발사체 및 그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등록협약 제1조). 발사국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그 중 하나를 등록국으로 결정하면 된다(등록협약 제2조 2항). 이러한 경우 우주물체의 관할, 통제 등과 관련된 여러 발사국간의 관계는 등록국을 결정한 내부협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우주물체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 이외에도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요원들에게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등록국의 민사 및 형사법이 우주 또는 천체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발사국의 등록절차에 대한 우월적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는 자국의 영역에서 발사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등록에 관해서 결정적인 주도권(initiative)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⁵⁰⁾

그리고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4조 2항), 각 등록국은 이전에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련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 또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UN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2항). 또한 등록협약 제5조에서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된 우주 물체가 제4조 1항 (b)에 언급된 기탁자 또는 등록 번호 또는 그 양자로서 표시되었을 때마다 등록국은 제4조에 따라 우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시 동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UN사무총장은 등록부에 이 통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0) van Bogaert, *op. cit.*, p. 119.

3.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

(1)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한계

1963년 우주법선언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UN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주조약 제4조 전반부에 의하면 당사국은 핵무기 기타 대량파괴무기⁵¹⁾를 실은 물체를 지구주위 궤도에 배치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무기를 우주나 그 천체에 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59년 남극조약에 이어 우주에 대한 ‘비핵지대’(Nuclear-Free-Zone)를 형성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우주에서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가능한데, 대부분 학자들은 제4조가 핵무기 기타 대량파괴무기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우주에서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77년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다른 적대적 이용에 관한 금지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⁵²⁾ 제2조⁵³⁾가 우주공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주조약 제4조를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⁴⁾

그러나 기타의 군사적 이용문제에 관하여는 외기권 공간으로서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천체를 구별하여 천체에 대하여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주조약 제4조 후반부에 의하면 달과 다른 천체는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군사기지나 시설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기동훈련을 천체 상에서는 일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과학적 목적이나 다른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 ‘평화적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소련은 ‘비군사적’(non-military)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비침략적인’(non-aggressive) 목적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광범위하게

51) 대량파괴무기로는 일반적으로 원자탄, 세균 및 화학무기를 의미한다.;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p. 113.

52) 16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977), 88; 1986년 12월 2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

53) “As used in article 1, the term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refers to any technique for changing-through the deliberate manipulation of natural processes-the dynamics, composition or structure of the Earth, including its biota, lithosphere, hydrosphere and atmosphere, or of outer space.”

54) 김종복, 「신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pp. 94-95.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군요원의 경우 달과 다른 천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이용이 비공격적이고 군사기지의 설치나 무기실험, 군사작전의 수행이 제한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주조약에서 특별한 병기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 또는 로켓(rockets)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⁵⁵⁾ 다시 말해서 ASAT(anti-satellite)와 BMD(space based ballistic missile defense)는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 지금까지 이 두 종류의 무기개발에 관하여는 합법적이라는 견해에 상호 동의해왔고, 소련이 비록 우주의 ‘비군사적’(non-military)화를 주장하였어도 사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주에 군사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점이다.⁵⁶⁾ 최근에는 ‘우주의 군사화’(militarisation of outer space)라는 용어보다는 ‘우주의 무기화’(weaponisation of outer spa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주의 무기화억제를 언급하고 있는 조약은 우주조약과 1963년의 “부분적 실험금지협약”(Partial Test Ban Treaty)⁵⁷⁾뿐이다. 이렇게 우주무기화를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는 UN총회 군축특별회기(UN General Assembly’s Special Session)가 위임한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 2008년 2월 12일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 PPWT)⁵⁸⁾을 공동으로 제기한 바 있는데, 미국은 현재 우주에서는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2) 우주의 환경보호

최근 우주활동을 활발해지면서 우주환경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인간이 발사한 우주물체와 위성 약 8000-9000개 중 6-7퍼센트만 작동되고 있어서 사실 94내지 93퍼센트가 우주폐기물(space debris, space junk, space waste)에 해당된다고 한다.⁵⁹⁾ 2009년 NASA에 의하면 현재 2000 km 이하에서 5 cm 미만의

55) van Bogaert, *op. cit.*, p. 68.

56) Jakhu, *op. cit.*, p. 85.

57) “대기권 내, 우주 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58) CD/1839, 29 February 2008.

59) Jakhu, *op. cit.*, p. 95.

우주폐기물이 약 19,000 개, 1 cm 미만의 우주폐기물이 약 300,000 개 정도가 우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⁰⁾ 실제로 2009년 2월 10일 미국 이리듐(Iridium)사의 통신 위성인 이리듐 33호와 러시아의 통신위성 코스모스(Cosmos) 2251호가 충돌한 바 있는데, 이 위성들은 외관상 별 문제가 없지만 기능은 오래 전에 이미 정지된 위성들이었다. 이리듐 33호는 발사된 지 12년 된 위성으로 전 세계 25만 명의 이용자에게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66개의 이리듐 위성 네트워크 중 하나이고, 코스모스 2251호는 오래 전에 작동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리듐 33호와 코스모스 2251호의 무게는 각각 500kg과 900kg이었다. 위성 간 충돌은 당장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과 이곳에 탑승해 있는 우주비행사들에게 위협이 된다. 파편이 충돌 현장보다 낮은 궤도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ISS에 2차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⁶¹⁾

우주조약 제9조는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방지규정을 두고 있다.⁶²⁾ 즉,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당사국은 협조와 상호 원조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다른 당사국의 상응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에 있어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당사국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을 회피하고 또한 물질의 도입으로부터 야기되는 지구 주변에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를 가져오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달과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의 탐색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appropriate measures)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에서 국가 또는 그 국민이 계획한 활동 또는 실험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다른 당사국의 활동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당사국은 이러한 활동과 실험을 행하기 전에 적절한 국제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주개발이 현세대만 위해서 개발되어서는

60) The Threat of Orbital Debris and Protecting NASA Space Assets from Satellite Collisions, 28 April 2009,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참조; 또한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Bloomberg Businessweek)는 현재 50만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시속 2만 8163km로 지구 궤도를 도는 50만개 우주 쓰레기를 파악하고 있다. 엄청난 속도를 가진 파편은 위성을 파괴하고도 남는데, 2만개가 넘는 파편은 야구공보다 크며 50만 개는 구슬 크기 정도이다. 매우 작은 파편은 지구에서 파악할 수 없어 실제로 우주 쓰레기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ETNEWS.com, 2013년 11월 24일자 참조).

61) “위성충돌·우주쓰레기, 우주탐사 발목 잡는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3월호, 2009, 참조.

62) 우주조약 제9조의 제정과정에서 관하여 Howard A. Baker, “Protection of the Outer Space Environment: History and Analysis Article IX of the Outer Space Treaty”, 12 AASL, 1987, pp. 143-171 참조.

아니 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주조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인 ‘유해한 오염’, ‘환경의 불리한 변화’가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강제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⁶³⁾ 더구나 이러한 용어들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고, 특정한 행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협의하라는 지정을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협의상황을 결정하도록 한 것과 거부가능하게 한 점 등도 의무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지적된다.⁶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포함되는 규칙 중 달과 그 외의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 협력 및 상호원조의 원칙에 따른 의무 및 조약의 다른 모든 당사국의 대응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달과 그 외의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서의 모든 활동을 실시해야 할 의무는 ‘우주폐기물’에 관한 국제적 조치를 강구할 경우의 법적 근거가 되며, 또한 이들의 의무는 우주조약상의 의무를 떠나 국제관습법상의 규칙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⁶⁵⁾

NASA를 비롯한 주요 우주활동국의 우주활동 주관기관들이 우주폐기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간 우주폐기물 조정위원회”(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IADC)가 우주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주폐기물감소지침을 채택하여 왔다. 우주폐기물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살펴보면 1987년에 이미 미국과 유럽 간에 실무선의 협력이 있었고, 1989년 일본과 소련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1993년 이것이 확대되고 공식화되어 IADC가 조직된 것이다.⁶⁶⁾ IADC는 우주에서 인공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폐기물과 관련된 활동의 조정을 위한 정부기관 간 국제포럼으로서 회원 우주기관 간에 우주폐기물 연구활동 정보를 교환하여 연구협력 기회를 증진시키며, 진행 중인 협력활동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주폐기물 감소방안을 찾고 있다. COPUOS의 요청에 의하여 IADC는 2001년 이래 컨센

63) Viikari, *op. cit.*, p. 60.

64) Nicolas M. Matte,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Use of Outer Space”, 14 *AASL*, 1989, p. 429.

65) 이영진, “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9, p.162.

66) 현재 동 위원회에 가입된 기관으로는 이태리의 ASI (Agenzia Spaziale Italiana), 영국의 BNSC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프랑스의 CNES(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중국의 CNSA(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독일의 DLR(German Aerospace Center), 유럽우주기구(ESA: European Space Agency), 인도의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일본의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미국의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우크라이나의 NSAU(National Space Agency of Ukraine), 러시아의 ROSCOSMOS (Russian Federal Space Agency) 등이 있다.; IADC 홈페이지(<http://www.iadc-online.org/index.cgi>) 참조.

서스(consensus)에 의해 우주활동의 제 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인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을 개발, 권고한 바 있다.⁶⁷⁾

UN에서 우주관련 문제를 다루는 COPUOS에서 1994년 이래 우주폐기물 문제 논의를 주도한 것은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가 아니라 과학기술소위원회(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로서 1999년 우주폐기물에 관한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on Space Debris)를⁶⁸⁾ 발간한 바 있다. 그리고 2007년 6월 COPUOS 제527차 회의는 ‘우주폐기물작업반’에서 개발한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을 승인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동년 12월 제 62차 UN총회에 제출되어 총회결의로 채택하였다.⁶⁹⁾ UN의 최근 회의에서 몇몇 대표는 우주폐기물에 관한 비구속적 가이드라인의 채택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개도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COPUOS의 법률소위원회에서 구속력을 갖는 법적 문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⁷⁰⁾

별도의 전문조약을 제정하려는 접근으로는 세계국제법협회(ILA)를 들 수 있는데, ILA 우주법위원회가 1986년부터 우주폐기물 문제를 논의하여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66차 ILA연차회의에서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협약은 제1조 (c)에서 ‘우주폐기물’을 “현재 작동하지 않고 예견 가능한 미래에 이러한 상태에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우주상의 인공물체”⁷¹⁾로 정의하고, 협약 체결국과 국제기구에 관할 또는 통제

67) Viikari, *op. cit.*, p. 94.

68) United Nations, Sales no. E.99.I.17.

69) UNGA Resolution 62/217 (A/RES/62/217) of 21 December 2007, para. 26;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국제적 집행절차나 각자의 고유한 집행절차에 따라 우주폐기물 감축 관행과 절차에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자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가이드라인은 우주선이나 궤도정류장의 임무계획과 운영에 적용된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그자체가 국제법상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우주선과 우주발사체의 임무계획, 설계, 제조, 운영(발사, 임무, 폐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상작업 중 폐기물 배출 제한(가이드라인 1) 작업 단계에서 분리가능성 최소화(가이드라인 2) 궤도에서의 우발적 충돌가능성 제어(가이드라인 3) 고의적 파괴나 다른 유해행위의 회피(가이드라인 4) 탑재연료로 인한 임무 후 분리가능성의 최소화(가이드라인 5) 저궤도에서 임무완료 후 존속기간 제한(가이드라인 6) 지구정지궤도에서 임무완료 후 존속기간 제한(가이드라인 7) 등을 들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의 설명에 관하여 정찬모, “우주폐기물관련 국제법적 대응분석”, 『인권과 정의』, vol. 402, 법조협회, 2010, pp. 9-10 참조.

70) UNCOPUOS, A/63/20 pp. 117-118; A/62/20 pp. 17-18.

71) “Space debris means man-made objects in outer space, other than active or otherwise useful

하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우주폐기물로 인한 손해나 위험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ILA 협약초안은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⁷²⁾, 정보와 기술의 협력과 교환의 의무규정(제4조),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에 따른 국제책임(제7조),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절대 책임원칙을 택한 점(제8조), 분쟁해결절차를 구체화 한 것(제9조)이 기존의 책임협약과 비교되는데, 우주폐기물로 인한 위험과 결과에 대한 최초의 국제협약안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⁷³⁾

한편 “Cosmos 954 사건”을 계기로 1992년 12월 14일 총회는 결의 47/68로 “우주에서의 핵연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NPS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⁷⁴⁾ NPS원칙이나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것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고,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분쟁해결

우주조약 제13조에서 이 조약의 규정은 이 조약의 단일 당사국에 의하여 행해진 활동이나 또는 국제적 정부 간 기구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진 경우를 포함한 기타 국가와 공동으로 행해진 활동을 막론하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이 조약 당사국의 활동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제적 정부 간 기구가 행한 활동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든 실제적 문제는 이 조약의 당사국이 적절한 국제기구나 또는 본 조약의 당사국

satellites, when no change can reasonably be expected in these conditions in the foreseeable future.”

72) 첫째,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의 우려가 있는 우주폐기물에도 적용 된다. 둘째, 사람과 사물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 밖의 환경에 대한 손해도 포함한다. 셋째, 적용대상이 우주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73) Maureen Williams, “Space Debris: the academic world and the world of practical affairs”, *Proceedings of the 44th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 2001,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p. 328; ILA 협약 초안분석에 관하여 이재곤, 『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pp. 202-211 참조.

74)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GAOR 47th Session, Supp. No.20, A/47/20, 25; NPS에 관하여 김한택, “우주에서의 핵연료(NPS)사용에 관한 우주법”,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제1호, 2007, pp. 29-54 참조.

인 동 국제기구의 1 또는 2이상의 회원국가와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는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1996년 헬싱키 회의를 거쳐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을 채택한 바 있다.⁷⁵⁾ 타이페이 협약안 제1조에 따르면 동 협약안은 당사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우주에서의 모든 활동과 우주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적용된다. 또한 그것은 당사국간 우주조약에 규정된 국제적 의무의 적용을 확인하면서 국가의 지속적인 감독 의무를 통해서 사기업 및 비정부 실체에게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안은 비구속적 해결절차와 구속적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구속적 해결절차는 교섭(negotiation)이나 기타 분쟁해결의 평화적 수단 혹은 조정(conciliation)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4조),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협약안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구속적 해결절차는, 비구속적 절차에 대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분쟁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다. 이 절차는 아래와 같은 방안 가운데에서 우선순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1. 만약 국제우주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Space Law)가 설치될 경우의 동 재판소
2. 국제사법재판소(ICJ)
3. 동 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중재재판소

동 협약안은 몇몇 규정들을 통해서 중재재판소와 국제우주법재판소의 절차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⁷⁶⁾

75) Final Draft of the Revised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LA, Report of the 68th Conference Taipei, Taiwan, Republic of China, 1998, pp. 249-267.

76) Geradine Meishan Goh,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A Multi-Door Courthouse for Outer Spa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p. 67-68.; 절차의 선택은 당사자가 협약의 최종 초안에 서명하거나 인준하거나 또는 선언이라는 수단에 의해 동의를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유효한 선언에 포함되지 않는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재판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제6조 제2항). 당사자들이 동일한 절차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분쟁은 그 절차에만 맡겨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 분쟁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동일한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 사이에 별도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에만 맡겨질 수 있다. 과학적 내지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동 협약의 규정은 중재재판소 내지 재판소에 두 명의 기술 전문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투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제8조). 관할권을 가지는 법정이나 재판소에 의한 결정은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적인

한편 중재재판소이긴 하나 2011년 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우주활동 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Outer Space Activities)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한 점은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예상하고 있다.⁷⁷⁾

(4) 용어의 정의문제

Bin Cheng 교수는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우주법에서는 우주수송수단(또는 우주로켓, space vehicles), 우주선(spacecraft), 우주물체(space objects), 인공우주물체(man-made space objects), 우주에 발사된 물체(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등 이러한 용어에 대한 구별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위성(satellite)의 경우에도 인공위성(artificial satellite)과 구별되지 않고, 특히 달과 천체에 관해서도 시설물(installations), 구조물(constructions), 수송수단(vehicles), 장비(equipment), 설비(facilities) 등의 용어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이러한 용어들이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되거나 그들의 사용에 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주활동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⁷⁸⁾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단일우주조약제정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의 불일치 문제이다.⁷⁹⁾ 용어의 정의 문제는 개정이나 추가의정서를 통하여도 해결이 가능한데, 우주조약 제15조에서는 우주조약의 당사국은 본 조약에 대한 개정을 제의할 수 있고, 개정은 조약당사국의 과반수가 수락한 때에 개정을 수락한 우주조약의 각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우주조약을 나머지 각 당사국에 대하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제13조 제1항); 조홍제, “우주법상 분쟁해결 방안”,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 260 참조.

77) 김한택,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41호, 안암법학회, 2013, pp. 237-240.

78) Bin Cheng,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pace: The Need for New Treaties”, 19 *JSL*, 1991, p. 30; 김한택, 전제서, p. 332.

79) Carl Q. Christol, *The 1979 Moon Agreement: Where Is It Today?*, 27 *JSL* 1999, pp. 26-30.

여 동 당사국의 수락일자에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⁸⁰⁾

III. 결 론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캐나다 맥길(McGill)대학교 Jakhu 교수는 우주조약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global public interest)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과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80) Heidi Keefe, *op. cit.*, p. 358.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 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체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Outer Space Activities)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의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Space Assets)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복, 『신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 김한택, 『국제항공우주법』, 제2판, 와이북스, 2012.
- 김한택,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제41호, 안암법학회, 2013.
- 김한택,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우주법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5권 1호, 2010.
- 박원화·정영진, 『우주법』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 이영진, “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 24권 제1호, 2009.
- 이재곤, 『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 조홍제, “우주법상 분쟁해결 방안”, 『원광법학』제24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van Bogaert E. R. C., *Aspects of Space Law*,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6.
- Cheng, Bin, *The 1967 Space Treaty*, 95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1968,
- Cheng Bin,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pace: The Need for New Treaties*, 19 *JSL*, 1991
-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Oxford, 1997.
- Christol Carl Q.,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Pergamon Press, 1982,
- Christol Carl Q., *The 1979 Moon Agreement: Where Is It Today?*, 27 *JSL* 1999.
- Diederiks-Verschoor I. H. Ph & Ko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3rd revise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 Goh Geradine Meishan,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A Multi-Door Courthouse for Outer Spa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 Haanappel P. P. C., *The Law and Policy of Air Space and Outer Space-A Comparative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Jakhu Ram,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SL*, 2006.
- Jasentuliyana N, *Article I of the Outer Space Treaty Revisited*, 17 *JSL* 1989,

- Jasentuliyana N,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Keefe Heidi, Making the Final Frontier Feasible: A Critical Look at the Current Body of Outer Space Law, 7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995.
- Malanczuk, Peter,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 Routledge, 1997.
- Matte Nicolas M, *Limited Aerospace Natural Resources and Their Regulation*, 7 AASL, 1982,
- Matte Nicolas M,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Use of Outer Space*, 14 AASL(1989).
- Trimble James J. *The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and its Effect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11 *Pepperdine Law Review*. 1984,
- Vereshchetin V S & Danilenkio G M, *Custom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JSL, 1985
- Viikari Lotta, *The Environmental Element in Space Law-Assessing the Present and Charting the Futur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 Williams Maureen, *Space Debris: the academic world and the world of practical affairs*, Proceedings of the 44th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 2001,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 Qizhi He, *The Outer Space Treaty in Perspective*, 25 JSL, 1997.

초 록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우주법선언, 우주조약, 달조약, 국제관습법, 강행규범(*jus cogens*),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Kim, Han-Taek*

1967 Outer Space Treaty(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is a treaty that forms the basis of international space law. OST is based on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nnounced by UNGA resolution. As of May 2013, 102 countries are states parties to OST, while another 27 have signed the treaty but have not completed ratification.

OST explicitly claimed that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r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Art. II of OST state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reby establishing *res extra commercium* in outer space like high seas. However 1979 Moon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moon and its natural resourc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CHM).” Because of the number of the parties to the Moon Agreement(13 parties) it does not affect OST. OST also established its specific treaties as a complementary means such as 1968 Rescue Agreement, 1972 Liability Convention, 1975 Registration Convention.

OST bars states party to the treaty from plac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bit of Earth, installing them on the Moon or any other celestial body, or to otherwise station them in outer space. It exclusively limits the use of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o peaceful purposes and expressly

* Professor, School of Law,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hibits their use for testing weapons of any kind, conducting military maneuvers, or establishing military bases, installations, and fortifications. However OST does not prohibit the placement of conventional weapons in orbit. China and Russia submitted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on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2008. USA disregarded PPWT on the ground that there are no arms race in outer space.

OST does not have some articles in relation to current problems such as space debris, mechanism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 arising from st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in specific way. COPUOS established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based on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nd ILA proposed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for space debris problems and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 established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Outer Space Activities” and ILA proposed “1998 Taipei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 problems.

Although OST has shortcomings in some articles, it is very meaningful in international law in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basic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established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s customary law and *jus cogens* in international law as follows;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all be carried out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and shall b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uter space shall be free for exploration and use by all States; outer space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 principles of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imposes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 applicable to all States. This principles find significant support in legal norms dealing with following points: space activities as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bligation to cooperate; astronauts as envoys of mankind; avoidance of harmful contamination; space activities by States, private entiti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bsolut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certain space objects; prohibition of weapons in space and militarization of the celestial bodies; duty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pace regime.

Key Words: 1963 Space Law Declaration, Outer Space Treaty, Moon Agreemen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Obligation *erga omnes*.